

- 창원시설공단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전원 -

수험생 안내사항

□ 검정항목 및 내용

- 검정항목 : 휠체어 이송 및 수동 슬로프 차량 승하차
- 내 용 : 2명의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기초체력 및 기본 안전의식 검증
 - 휠체어 탑승자 : 75Kg±5Kg 내외 성인남성(자체 직원)
 - 검정내용 : 수동 슬로프 장착 교통약자콜택시차량 내 휠체어 탑승자 승하차

구 분	주 요 내 용	비 고
휠체어 이송 및 안전한 승하차	성인남성 탑승(75Kg±5Kg) 휠체어 이송 ⇒ 수동슬로프 차량 내 승차 및 휠체어 고정벨트 체결 ⇒ 휠체어 고정벨트 해체 ⇒ 차량에서 휠체어 하차 / 동일 승하차과정 2회 연속 반복	

○ 평 가 : **A, B 등급 합격** / **C 등급 탈락**

평가 결과	평가위원 2명 전원이 '평가표 내 모든 항목 적합' 판정	평가위원 2명중 1명이 '평가표 내 1개 항목 부적합' 판정	그 외
등급	A	B	C

항 목	부적합 기준	비고
휠체어 이동	바퀴가 레인을 완전히 벗어난 경우	
휠체어 고정	1.차량 리프트 진입 전 휠체어 브레이크를 미체결한 경우 2.차량 내에서 휠체어 브레이크를 미체결한 경우 3.차량 리프트 하차 후 휠체어 브레이크를 미체결한 경우	
안정적인 승·하차	1.차량 리프트 진입시도 5회 초과 2.휠체어 전복 등으로 탑승자 신체 일부가 바닥에 접촉될 경우 3.승차 후 승차 기준선 미인입	
고정벨트 체결 및 해체	1.차량 리프트 진입 전 휠체어 고정벨트를 잘못 연결한 경우 2.차량 내 에서 휠체어 고정벨트를 잘못 연결한 경우 3.하차 시 휠체어 고정벨트를 미해체 한 경우	
시간초과	이송 및 승하차까지 제한시간 10분을 초과할 경우	

※ 시험 시작 전 실시하는 실기시험 부적합 기준을 숙지하여 응시하시고 숙지하지 못하여
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※ 시험 중 부정행위 및 대리응시 적발 시 불합격 처리되며, 향후 창원시설공단 채용에
재응시가 불가능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합격자 발표 : 2026. 6. 2.(화)